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2년 9월 25일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 지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022년 9월 25일 시행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
지나?**



목차

알고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핵심 용어」	04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06
제2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18
제3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34
제4편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54
제5편 구제기구 및 구제절차	68



알고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핵심 용어



💡 예술인

-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 예술사업자

-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법인)

💡 예술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예술지원기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중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위의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 예술 활동

-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 비평 포함), 실연(연습, 훈련 포함), 기술지원 등의 활동

💡 예술교육활동

-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

💡 예술지원사업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

💡 성희롱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가 헌법이 명령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됩니다. 5년여에 걸친 대장정 끝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본격적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어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조항은 그 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술인들조차도 예술가의 권리가 헌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참조할 만한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법학자들도 이 조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법학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어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

헌법 제22조제2항이 정하는 예술가의 권리는 '잃어버린 권리'였으며 법학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술가들의 주목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

그러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원인 중의 하나가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도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헌법이 명하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대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7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헌법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첫 번째 의의를 말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첫 번째 의의

헌법이 제정된 1948년부터 73년이 지나서 우리 헌법 조항이 비로소 완성

나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보다 확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의 범주 확대	
예술인 복지법('12.11.18. 시행)	예술인권리보장법('22.9.25. 시행)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복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익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이라는 점에서 전업 예술인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점은 예술인 권리보장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는데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여 권리보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보호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습생도 예술인으로 당당히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직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보호대상 예술인으로 포함

- * 예술대학, 예술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부터 훈련을 받는 연습생



다 예술 활동의 적용 대상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 활동 정의를 「예술인 복지법」의 문화예술용역 정의에서 가져오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3항)	예술인권리보장법(제2조제1항)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예술 활동에 대해서 “예술인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한 창의적 활동”으로 전제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활동 등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간의 해석의 논란이 있었던 기획과 비평을 창작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고 실연 활동에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고 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작

기획과 비평 포함

예술교육활동은 예술 활동의 정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예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술 활동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활동”이라 하여 별도로 정의하였고 예술교육활동이 예술 활동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연

연습과 훈련 포함

라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보장의 세 영역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영역은 문화예술계의 아팠던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미래를 말합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은 예술인권리보장의 출발점이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은 예술인권리보장의 심화라 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따라서 예술인권리의 미래 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실질적인 의의는 예술인의 지위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후퇴시키지 않고 오직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대한 차별행위 금지
-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 침해 금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예술인권리영향평가
-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금지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금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

마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구성

1 전체 구성

예술인권리보장법은 6개의 장과 4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장별 구성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5장 예술인 구제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이고 제5장은 제1절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제2절 예술인보호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조문 구성	구성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라는 사회적 직업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 • 보호대상인 예술인을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 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 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 기관의 책무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 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 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확화-행위자를 유형화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 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피해지원,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0조~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예술인보호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신고사실의 조사 *조사절차의 종결 *구제절차의 종결 등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의 중단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분쟁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기구)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 보호관을 두어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 • (구제절차) 예술인의 신고→예술인보호관의 조사→위원회 의결→문체부장관 조치 * 문체부 장관도 신고대상으로 포괄하여 일관성 유지 • 재정지원 중단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 과태료 사항 규정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제41조)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2 예술인 권리보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장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은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장의 금지 규정은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장의 금지 규정의 위반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가 「형법」의 처벌규정에 해당될 때 구제조치의 하나로 형사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장은 법 시행 이후에 예술인의 지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술인은 예술을 영위한다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꾸려는 체계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입니다. 예술인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개인사업자인 예술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술법제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금지행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겨 규정한 것인데 불공정행위의 주체도 예술사업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제도 시행 후 제기된 개선안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사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제도의 본격화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술인조합 제도의 도입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예술인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인조합은 비록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특정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술인이 자신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권리보호에서 적극적인 권리주장의 시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장은 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영역에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방지조치는 예술분야에 특유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구제기구와 구제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을 둬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에 대한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합니다. 위원회에는 예술인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의 일원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 예술인권리보장 분과위원회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사요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정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



1. 신고 단계
예술인, 예술 단체,
예술인 조합



2. 조사 단계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3. 의결 단계
분과위원회 의결
→ 본위원회 의결



4. 구제 조치 단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
**과태료,
재정지원 중단·배제**

제1편
법 제정의 의의

제2편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가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1 헌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는 '미(美)를 추구하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자유는 '미'에 관한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의 창조적 발현을 위한 내심의 자유에서 출발하지만 표현될 때 가치가 더욱 고양되게 됩니다. 예술의 자유에는 예술창작, 예술표현, 예술집회와 예술경사 등이 포함되고, 예술품을 보급하는 사업자도 예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제헌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왔지만 이를 실천하는 법률은 없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1년에 제정되었으니 헌법이 명시한 예술가의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는데 무려 70년이 넘게 걸린 것입니다.

예술의 자유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기도 합니다. 예술 활동은 일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헌법적 보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예술적 집회와 경사는 그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22조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2 예술인 권리보장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주체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관들은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예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음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의 책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책임 주체

-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는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예술지원기관
 -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iii)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 iv) 이상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술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위험성을 내포

예술지원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관 중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예술 활동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담

예술교육기관

3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규정 체계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자유와 평등, 공정성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를 권리로 명시하면서 이러한 예술의 자유를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이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예술인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한 창작 환경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차원의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1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 선언

예술인의 권리

<p>표현의 자유</p> <p>헌법 제21조제1항</p> <p>“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p>	<p>예술의 자유</p> <p>헌법 제22조제1항</p> <p>“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	---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권리를 예술의 자유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즉 첫째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둘째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행위 금지

예술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 • 예술인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

행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

의무 대상 : 공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

예술인이 갖는 예술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특히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가 침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되는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에 해당되는 주체는 공무원,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둘째, 침해의 수단은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폭행이란 대체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고, 협박이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이나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해 해를 가할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불이익의 위협이란 예술활동 관련 고용이나 창작활동, 업무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위 결과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3 예술의 자유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 예술인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들에 의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있게 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의 금지

- 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
- 차별금지영역: 예술지원사업

▶▶ 구체적 차별금지 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1 예술인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노동, 사회복지 등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개별 법률이 적용될 때 자의적인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차별금지 원칙의 내용

평등권의 일반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등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차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운용해오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이러한 입법례에 따라 예술인지원사업에서 차별금지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별 금지 사유가 총 19가지입니다만,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른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또는 적극적 차별개선조치는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미국에서 인종이나 경제적 신분을 이유로 오랜 기간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과거의 그러한 잘못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특혜 또는 우대를 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중에 있는 여성고용할당제, 북한이탈주민 또는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금지되는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허용되는 적극적 차별개선조치

-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허용

2 예술지원사업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차별하는 경우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받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있게 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1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예술지원사업에 있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불공정한 지원은 다양한 예를 들 수 있게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 특정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 로비와 연고에 따른 지원, 청탁에 의한 지원,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한 차별적 지원, 불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한 지원, 심사결과의 조작을 통한 지원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원 배분이 불공정해지고 지원에 차별이 있게 되므로 불이익을 예견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창작의 자율성을 위축되게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균형있는 예술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사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고 심사방법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정성 침해 행위의 유형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이 침해되는 행위 유형을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은 예술지원사업에서 심사단계별로 심사이전단계 - 심사단계 - 심사후단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를 유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별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유형화



첫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위계란 속임수나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술이란 사람을 기망하는 즉 속이는 술책을 말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지시한 행위만으로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이어서 지시 이후에 실제로 문서가 조작되지 않더라도 지시 자체로 공정성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넷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는 경우입니다.

3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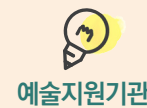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공정성 침해행위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성을 침해받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는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있게 되면 예술인권리 보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등 구제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보장 의미와 적용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경우를 위반한 경우 예술인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 후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 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경우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경우를 위반한 경우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 후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등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국가등의 약칭보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함.

** 권리침해행위에 해당된다까지만 설명하고, 신고하게 될 경우 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된다는 것까지만 설명함.



제3편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선언

예술인권리보장법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이 정당한 수익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침해받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권리는 헌법의 결사의 자유에서 비롯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예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는 예술인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공연법」에 공연장의 안전에 관한 여러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넷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익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술인의 권리 침해 금지 의무를 선언하여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0조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나 예술활동 개입 금지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는 예술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술인권리 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예술 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예술정책의 팔 길이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예술정책의 시행에 있어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말합니다. 예술지원의 팔 길이 원칙과 함께 예술 활동 지원대상의 선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선정심사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인의 보호를 위해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술인보호책임자는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인보호책임자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 문제나 불만제기에 대하여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됩니다. 또한 예술인보호책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도 담당합니다. 예술인권리영향평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하여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것입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한 선정 심사기준 마련하여 공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인보호책임자 지정

-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보호책임자가 됨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시행

- 예술인보호책임자가 시행
-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직접 시행 사업만 적용
-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자체적으로 평가



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1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의 의의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는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와 재정지원 중단·배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예술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1 어려워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

- 예술인은 영세한 사업자 규모에 불과해 기업 중심의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불공정행위 주체를 예술사업자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

2 - 2013년에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라는 명칭으로 예술인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불공정행위로 명칭 변경. 2021년 예술인관리보장법 제정으로 이 법으로 옮겨서 규정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와 재정지원 중단·배제 처분

이 제도는 어떤 이유로 도입되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대부분의 예술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영세한 사업자 규모에 불과하여 기업 중심의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특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라는 명칭으로 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를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였습니다. 「예술인복지법」과 비교할 때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불공정행위 주체를 예술사업자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누가 불공정행위를 하는가?

불공정행위의 주체로서 먼저 예술사업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술사업자란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제7호」
- 종사하는 자이므로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
- 법인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
-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사업자는 등록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면 계약 이외에 구두계약도 포함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술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업으로 하는 자라 규정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회사도 포함됩니다. 법인은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포함하므로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내세운다 해도 그 법인이나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으면 예술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예술사업자는 등록이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술 활동을 기획·제작·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행정기관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술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등록을 요구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예술사업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이나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예술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예술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자는 예술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이 반드시 서면 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에는 구두계약도 포함되므로 서면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같이 일하고 약속했다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도**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마치 사업자와 같은 지위에서 예술 행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아 예술용역의 구매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은 직접 사업의 경우에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위탁사업자가 예술사업자로서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도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아닌 사업자와 같은 지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예술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아 예술용역의 구매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음

3 무엇이 불공정행위인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제1항」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불공정행위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 예술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 받아 예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행위이거나 둘째,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불공정행위의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 여부로 불공정행위를 판단합니다.

▶▶ 불공정행위란?

- 예술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 받아 예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제대로 할 수 없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행위

(1) 불공정한 계약강요 행위

불공정한 계약강요 행위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열등한 계약상의 지위에 있는 예술인이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이는 예술인을 착취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 강요의 판단은 예술인이 계약을 맺는 시점에서 계약할 예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는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은 예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먼저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수익 배분을 해주어야 할, 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의 판단은 예술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술 활동에 대한 방해나 지시·간섭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의 발전기반을 해치는 것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정체성이 심각하게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으로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예술인이 그 예술사업자와의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다른 예술사업자와 일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4)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술인은 애써 노력해서 만든 아이디어를 빼앗는 것은 결국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의 기반을 해치게 됩니다.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은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의 부당 이용이 예술 활동을 제약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 불이익 강요 행위

불이익 강요 행위란 앞의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이익 강요 행위는 앞의 네 유형에 해당하는 않는 기타 유형으로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형의 제약없이 포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나 그것으로 인해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 강요로 볼 수 없습니다.

1 불공정한 계약 강요행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 구입강요 행위/이익제공강요 행위/배타조건부 계약강요 행위/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 지연·제한 행위

예술인에게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 수익배분 거부 행위/수익배분 지연 행위/수익배분 제한 행위

3 예술활동 방해· 지시·간섭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 제공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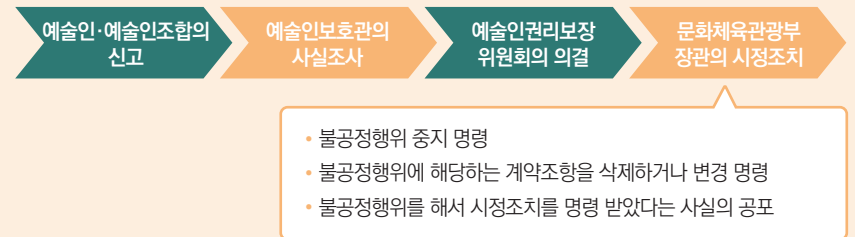
5 불이익 강요 행위

앞의 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강요 행위/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4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예술인·예술단체 및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예술인보호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를 하거나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으로 불공정행위 중지 명령,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 명령, 불공정행위를 해서 시정조치를 명령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시정명령을 지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하도록 통보한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 금지의 의미와 적용



예술인

예술인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려면 예술인은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 해야 합니다.



예술사업자

예술사업자는 예술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재정지원에서 중단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예술 활동에 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하여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사업자와 유사하게 불공정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구제조치와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도 예술지원사업이 아니라 그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예술 활동에 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하여는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예술사업자와 유사하게 불공정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구제조치와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술인조합

1 예술인조합의 의의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단체를 말합니다. 예술인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별개의 제도입니다.

예술인조합은 특정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예술사업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예술인조합은 협의요청만 할 수 있으며, 예술인조합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단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조합이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결성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단체

→ 예술인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별개의 제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

- 예술인조합은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 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함
협의요청만 인정됨(조합이 계약체결을 할 수 없고, 단체 행동도 할 수 없음)
-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조합과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예술인조합의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술인조합에 가입할 것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예술인이나 예술인·예술단체나 예술인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 예술인보호관이 사실조사를 하고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를 하거나 시정권고를 하게 됩니다. 불공정행위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제조치는 수사외의, 행정처분, 징계요구가 있는데 14일 이내에 피신고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는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의 중지 권고,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권고 등이 있습니다. 시정권고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예술인/예술인조합의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



예술인조합의 의미와 적용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특정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인 2명 이상의 예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조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예술인조합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활동방해 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구제조치나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이 특정 예술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예술인조합이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활동방해 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구제조치나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는 없지만 예술사업자나 예술지원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예술 활동에 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조합이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조합이 다른 예술 활동과의 통일성 또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활동방해 행위를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구제조치나 시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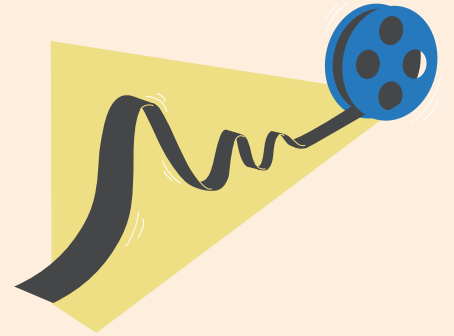


제4편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1.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의 도입



가 성희롱·성폭력의 일반적 의미와 논의의 배경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도 사용되며, 성폭행과 성추행은 보통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지만, 성희롱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관련된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범죄에는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 강간등 치사, 강간등 살인, 강간등 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음행매개죄, 음화반포죄, 공연음란죄, 추행이나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 등을 말합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 상담, 지원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근절 종합지원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의 전화 등이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별도의 신고 또는 지원체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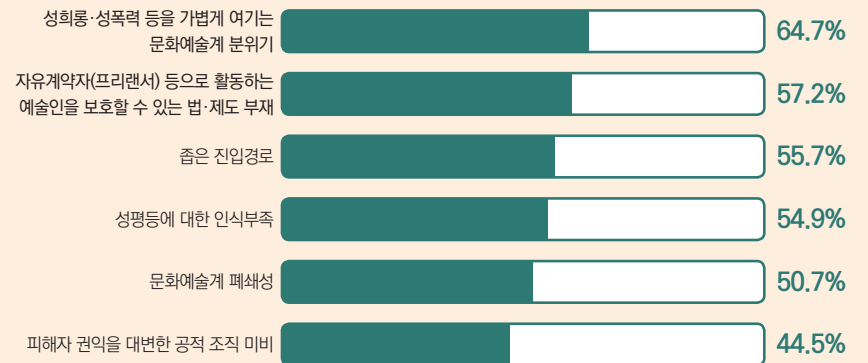
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유

안타깝지만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사각지대로 지목받기도 하고, 실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의 설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3,718명이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희롱·성폭력 등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예술 분위기 64.7%,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부재 57.2%, 좁은 진입경로 55.7%, 성평등에 대한 인식부족 54.9%, 문화예술계 폐쇄성 50.7%, 피해자 권익을 대변한 공적 조직 미비 44.5% 등입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계의 분위기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법적 제도적 현실이 그 원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규정들이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발생 이유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설문 결과 3,718명 대상 복수응답)



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성희롱·성폭력의 의미

▶▶ 전제조건

- 예술인의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

성희롱

-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희롱과 성폭력 모두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기존의 법적 정의에 따르되 이 법에 의해 처리되거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르게 됩니다.

라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방향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가지 제도를 두었습니다. 첫째,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을 위해 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예술인에 의한 성희롱·성폭력행위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행위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의 방지 대책 수립, 신고·상담센터의 설치,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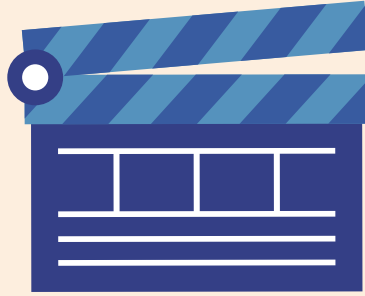
셋째,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가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차별 금지 사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편견, 비하, 폭력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인권을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 ·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나 예술인의 성희롱 · 성폭력 금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예술인의 성희롱 · 성폭력행위 금지

*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됨



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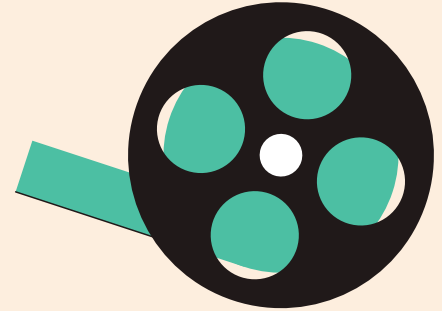
예술인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예술 활동 등에서 예술 활동·예술교육활동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예술인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하기는 하지만, 행위 주체를 다소 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되는 주체로 규정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둘째,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셋째,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넷째,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다섯째,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외의 사람들이 예술인에 대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한 경우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예술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 *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 예술교육기관에서 예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하거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
- *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 *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사람

3.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무

▶▶ 조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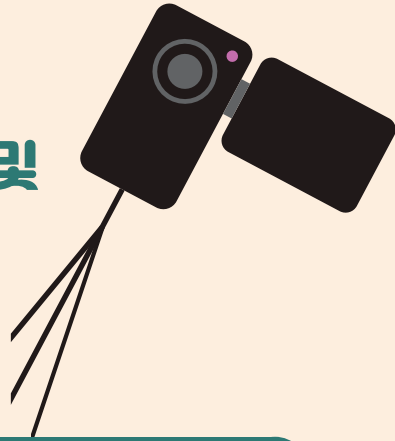
1.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2.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4.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법정 의무교육 중 하나로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 됩니다.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나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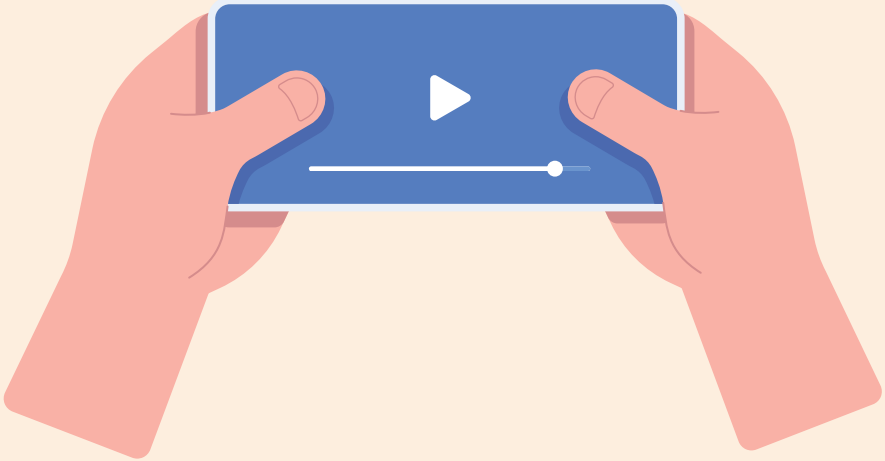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의 수행을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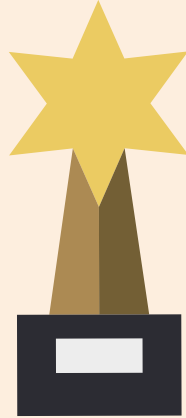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사업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의 대행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술인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그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5.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등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는 정책수립 및 제도마련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그 가운데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도 포함됩니다(제15조 제2항 제3호).

실태조사의 협조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예술지원기관·예술교육기관의 장, 예술단체·예술인조합의 대표자, 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시 응답하여야 함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적용



예술인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사업자

예술사업자 또는 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5편

구제기구 및 구제절차



가 예술인권리구제기구

1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1)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구제기구로는 대표적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절차의 종결 및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그 외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그밖에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위원회는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 자격의 적극적 요건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 위원 자격의 소극적 요건으로 결격사유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거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3)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및 의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즉, 위원회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거나 심신상의 장애 또는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혹은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닌 한 위원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밀유지의무라 함은 심의·의결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의결의 공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또한,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스스로가 제척 혹은 기피신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은 공개합니다. 다만, 예술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 또는 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심의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합니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공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 예술인보호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예술인보호관 역할을 수행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 분쟁조정 지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 예술인보호책임자로서의 역할
 - 예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 처리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 총괄



나 구제 및 시정조치

1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 사실의 조사 과정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보호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에게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예술인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보호관은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신고사실 조사

-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음
-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내용 조사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의한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고 사실을 조사. 보호관은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우선적으로 설명하여야 함)
- 예술인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신고인·피신고인·피해자·관계인 등에게 관련된 사항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2 조사절차 및 구제절차의 종결

▶▶ 조사절차의 종결

신고된 사실에 대해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신고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고, 피해구제 위원회에도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사절차 종결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절차의 종결

예술인보호관은 조사결과 조사절차 종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결과와 구제조치 및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피해구제 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신고 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종결합니다. 구제절차 종결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제절차 종결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구제 및 시정조치

(1) 구제조치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구제조치에는 **수사의뢰, 행정처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구제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요청 전에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피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시정권고

위원회가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문화체육관광부 제외),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정권고를 수락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시정방안의 이행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를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정방안에 따라야 합니다.

(3) 시정명령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의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일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하여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가 있거나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견진술일을 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 해당 예술교육기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재정지원의 중단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그리고 예술인의 성폭력 행위 및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위원회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인보호관은 조정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원회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조정안을 이행한 경우에는 구제조치 요청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시정명령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5 불이익조치 금지 등

▶▶ 불이익조치 금지(법 제 38조)

- 누구든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고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 등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이상의 사항을 위반한 국가기관 등,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의 중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하여 예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시정방안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에 따른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정한 시정방안에 따라야 함

6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다는 이유에서 또는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가 있거나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지원대상 배제행위를 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신고사실에 대한 예술인보호관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에 대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불이익조치의 의미와 각 주체별 적용



예술인

예술인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과정에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조치의 유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나열되어 있는데,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의 차별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예술사업자로부터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술사업자

예술사업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과정에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사업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이익조치 중지, 시정명령,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술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술지원기관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과정에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술지원기관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이익조치 중지, 시정명령,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술지원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예술인보호관의 신고사실 조사과정에서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를 신고하거나 보고·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을 한 자에게 이를 이유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지원 대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이익조치 중지, 시정명령,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www.kawf.kr
- 발행인** 박영정
- 발행일** 2022년 9월
- 집필** 황승흠(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상우(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박종현(국민대학교 법과대학)
- 기획·편집** 송예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진권(한국생산성본부)
- 제작·디자인** 위복스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02-3668-0200, 025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검색>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입력



이 책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